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남창진 의원 외 10명

나. 의안번호 : 제965호

다. 제출일자 : 2016. 1. 28

라. 회부일자 : 2016. 2. 2

2. 제안사유

-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신고하는 자”를 “신고하는 사람”으로 “경영하는 자”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등록을 한 자”를 “등록을 한 사람”으로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민이 아닌 자”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한 사람”으로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으로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를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을 “신고 대상이 되는 사람은”으로, “신고인에 대하여”를 “신고인에게”로 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4.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 해당 없음

나. 입법예고 : 미시행(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임¹⁾)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원안 동의

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6.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개 요

- 동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장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동의 의견을 제출²⁾ 하였음

2) 택시물류과-3593(2016.2.11.)